



F5

# 캠퍼스 혐오표현 새로고침 가이드

대학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F5프로젝트

유니브  
페어





# 캠퍼스 협오표현 새로고침 가이드

대학 온라인 협오표현 대응을 위한 **F5프로젝트**

유니브  
세마

캠퍼스  
협오표현  
새로고침  
가이드



Contents

<b>들어가며 : 입장권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b>	05
<b>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발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b>	19
<b>대학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b>	39
<b>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b>	89
<b>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새로고침 가이드라인</b>	119
<b>에브리타임 내 명예훼손/모욕성 게시물 법적대응 매뉴얼</b>	129





들어가며

# 입장권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1999년 서울대 ‘스누라이프’, 성균관대 ‘성대사랑’ 등 각 대학의 총학생회나 몇몇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학교를 대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높은 이용률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2010년대를 지나오며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보편화되었다.

시간표 어플리케이션으로 2010년에 출시된 에브리타임은 익명 커뮤니티, 강의평/시험정보 공유, 학점계산기, 책 중고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며 전국 398개 캠퍼스 452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형 커뮤니티로 성장했다.(2020년 9월 9일 기준) 에브리타임은 2018년 앱스토어에서 무료 전체 부문과 무료 소셜 네트워크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앱 사용 빈도에서도 1위에<sup>1)</sup> 오를 만큼 대학생활에 있어 ‘필수 앱’이 되었지만,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익명성, 삭제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 대학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와 ‘논란’

에브리타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다. 초기에는 수강신청에 유용한 서비스로 소개되다 2015년부터는 줄곧 ‘인기’라는 수

---

1) “20대가 가장 자주 쓰는 앱은 ‘에브리타임’?”, <한국경제>, 2018.03.16.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03163855j>)

식어와 함께 ‘○○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sup>2)</sup>와 나란히 학내 여론의 장으로 인용되었고, 이때부터 학교 비리, 교수의 막말이나 군사주의적인 학과 문화, 여성혐오적인 연구기획 등이 논의되며 학내 고발의 장으로 역할하기 시작했다.

2016년, 게시판 기능 활성화로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강자로 주목받게 되면서는 여남공학 대학의 커뮤니티 내에서 성관계할 상대를 구하는 ‘프리19’ 게시판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사화되었다. 커뮤니티를 경유한 만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원나잇 스탠드를 한 상대 여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등 국내 최대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였던 ‘소라넷’과 거의 유사한 행태가 벌어졌다는 게 문제였다.

대학생 김정민(가명·24)씨는 “한 모임방을 통해 만난 이성들은 대부분 ‘야투’이라는 걸 한다”며 “야투 끝에 한번 만남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 연락을 끊으려고 했더니 카카오톡에 ‘야투’한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야투’는 성적인 묘사와 나체 사진 등 이미지를 주고받는 채팅을 말한다.<sup>3)</sup>  
— 2016년 7월 6일 <서울경제>

2) 대학교 대나무숲이란 각각의 대학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 직접 만드는 것으로 페이스북에 각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혹은 타 대학생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공간이다. 대나무숲은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활성화되었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바탕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한다. 대체로 인간관계, 연애, 진로, 토론, 연예 관련 글들이 게시된다.

“누가 누가 있나! 대학 익명 커뮤니티”, <한경잡앤조이>, 2015.12.01. ([http://www.jobnjoy.com/portal/joylife/campus\\_life\\_view.jsp?nidx=122902&depth1=2&depth2=1&depth3=3#self](http://www.jobnjoy.com/portal/joylife/campus_life_view.jsp?nidx=122902&depth1=2&depth2=1&depth3=3#self))

3) “은밀한” 시간표 어플 ‘에브리타임”, <서울경제>, 2016.07.06. (<https://www.sedaily.com/NewsView/1KYREGMFZ2>)

에브리타임이 ‘불건전한 만남’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난받게 되자, 개발진은 커뮤니티 정보공유 기능을 분리해 새 어플인 ‘캠퍼스픽’을 출시했다. 그러나 ‘프리19’ 게시판만 없어졌을 뿐 ‘모두의 연애’ 게시판이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에브리타임에서도 ‘성인게시판’, ‘만남의 광장’, ‘구인게시판’ 등 학교마다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었다. 2019년 6월에는 ‘심야 시간대 나체 인증사진’이라는 키워드로 한 공학 대학의 에브리타임 게시물이 뉴스에 방영되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커뮤니티 전체가 발각 뒤집힌 일도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음란물’이라는 표현에 담긴 성 보수주의적 혐의 안에서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논란이 되었을 뿐, 어떤 차별적 구조 하에 누군가의 성적 자유는 보장받아 마땅한 것이 되고 누군가의 성적 자유는 착취의 대상으로 쉽게 전락하고 마는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서울경제>의 2016년 가명 인터뷰에서 떠오르는 두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끊이질 않고 있는 ‘대학 단톡방 성희롱’, 그리고 불법촬영 또는 그루밍grooming과 유포협박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을 대표하는 최근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말이다. 3개월 전 변호사를 중개해주는 법률서비스 ‘로톡’ 사이트의 성범죄 분야 상담사례로 올라온 다음의 문의에서, 이것이 대학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연루되어 있는 문제임을 확신하게 된다.

‘대학 익명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에 약 일주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도용 음란 사진(성기 포함)을 올렸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커뮤니티 어플이지만 가입할 때 대학 합격증과 본인인증을 하여 해당 대학 재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고, 운영진에서 그 정보를 보관합니다. 제가 올린 게시판은 ‘성인게시판’으로, 다른 게시판에서 말하기 쑥스러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시판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 사진 혹은 도용된 음란 사진을 올리며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매번 여성을 사칭하여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릴 때마다 10초씩만 올려두고 바로 글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캡처를 통해 며칠간 자료를 수집했고, 이것을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특정한 통보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에 대한 통보였습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된다면...<sup>4)</sup>



## 논란이 되어야 했을, 혐오표현의 해악

공학 대학의 에브리타임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은 ‘성인게시판’에서의 평등만이 아니었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자유게시판’에도 같은 학교의 여학생, 타 대학 여학생, 여성 청소년, 여성 연예인, 여성 가족구성원, 길에서 만난 여성 등을 대상화·성희롱하는 글이 많았다. 어쩌면 커뮤니티 전반에 깔린 남성중심적 문화가 평등하지 못한 ‘구인게시판’을 만들어 냈다고 말하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4) “커뮤니티 어플 ‘에브리타임’에 도용 음란사진을 올렸습니다. 신고될 시 경과를 알려주세요.”, <로톡> 성범죄 분야 상담사례, 3달 전(접속일 2020년 9월 기준, 날짜 미공개), (<https://www.lawtalk.co.kr/qna/124483-커뮤니티-어플-에브리타임-에-도용-음란사진을-올렸습니다-신고될-시-경과를-알려주세요/0238-김준환>)

대나무숲이나 에브리타임의 주류 문화 역시 사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러 대학에 여성주의 학회와 모임이 연달아 생기고 활동을 펼쳐가면서부터였다. 학과에서 승인받은 여성주의 기초강연 행사 포스터를 에브리타임 홍보게시판에 절차를 지켜 올리자마자 신고 누적으로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포스터를 게시한 계정은 3개월간 이용정지 처분을 받기 일췌였다.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직접 에브리타임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하고 성차별적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오프라인에서는 한편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모임을 만드는 동안, 온라인에서는 또 한편의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론장의 문을 봉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페미니스트들은 대안적 공간으로 뛰어나왔다. 2018년 ‘연세대 남자들의 사상과 가치관(연남사)’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필두로 수많은 대학에서 연남사를 패러디한 페이지가 개설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에브리타임에서 통용되는 성차별적 발화들을 에브리타임 밖으로 끄집어내 전시하면서 대항했다. 매번 개선을 약속해놓고도 ‘신고 누적으로 인한 자동 삭제시스템’을 고수해온 에브리타임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자동 삭제시스템이 없는 더 넓은 대안적 공간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누적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들과 전국적인 미투운동, 그리고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으로 시작된 ‘해화역 시위’로 한국이 페미니즘 대중화 국면을 맞았을 때 공학 대학의 에브리타임도 말 그대로 ‘폭주’했다. 이제 삭제되는 건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만이 아니라, 중앙대자보판에 고정시킨 대자보였다. 주장이나 근거는 포털 기사 댓글창과 유사했지만 차이점은 에브리타임의

모든 이용자가 학교라는 동일한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자보 다음으로 찢기는 것이 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학내 여성주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었다.

그 해 여름부터 이듬해까지 총여학생회가 ‘역차별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직격탄을 맞았다. 무너지지 않고 맞서는 대학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있었지만, 총여학생회 또는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너무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연대서명에 동참한 학생들의 이름이 대자보판에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타임으로 옮겨져 평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활동가와 연대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억측, 근거 없는 비방, 폭력 예고가 이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출석이 불리는 강의실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누군가는 공개 지지를 철회해야 했지만 학교도 학생회도 신경 쓰지 않았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자들에게 학내 페미니스트들은 눈앞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욕적으로 묘사되는 ‘그 분들’ 세 글자였다.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역차별만이 차별로 이해되고, 반동이 곧 운동으로 인정되었다. 학생총투표로 총여학생회 폐지가 결정되자 “총여 함락 기념으로 국산 야동 봐야지”, “지금 총여 잔존 세력 경영관 앞에 있는데 진압봉으로 때리고 구둑발로 짓이겨야 함”, “차레대로 하나씩 몰아내자”라며 남아있는 학내 여성주의 모임 리스트를 나열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수많은 총여학생회 활동가들이 폐지의 주역으로 에브리타임과 그곳의 여론만을 학생회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대표자들로 꼽을 만큼, 백래시가 심화되고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던 그 때 혐오 표현의 수위는 절정에 달했고 에브리타임에는 폐지 찬성론자만이 입장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2020년 1월,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마친 변희수 하사에게 심신장애 전역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변 하사의 싸움에서 용기를 얻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숙명여자대학교 합격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곧바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다. 공학 대학에 비해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로운 듯했던 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혐오표현이 쏟아졌다. 여성의 안전은 트랜스젠더의 안전과 유리되지 않는다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A씨는 입학에 취소해야 했다. A씨를 지지하는 여대 내 학생회나 인권 동아리들 중에는 공학 대학의 여성주의 모임들처럼 에브리타임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다 애네한테 학교 뺏긴다, 그 전에 쫓아내야 한다”라는 선동은 어디서든 통했다. 여대에서 트랜스젠더는 공학에서 페미니스트만큼이나 불온하고 위협적인 존재였고, 역설적이게도 명백하게 소수자였으며, 그렇기에 노출되는 혐오표현에 취약했다. 물론, A씨의 입학 취소가 알려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대 구성원들을 비난하던 공학 대학들에서는 2016년부터 성소수자 동아리의 입학 축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훼손되곤 했다. 어쨌든 각자의 학교에 딱 한 걸음 더 내딛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공론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백래시는 혐오표현과 차별을 경유해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총여학생회와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수십 번 찬반 토론에 부쳐지는 동안 혐오표현의 해악은 그만큼 조명받지 못했다.



## 'X'가 아니라 'F5'를 누른 사람들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는 2020년 4월, 기자회견 <에브리타임은 n번방 2차가해·여성혐오성 게시물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하라!> 이후 본격적으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F5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혐오할 자유가 아닌 토론할 자유,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꺼이 상상하고 '새로고침'하기 위해 24명이 모였다. 이 책은 기획지원팀, 모니터링팀, 미디어팀, 법률팀의 각 팀원들이 4개월 동안 'X' 버튼 대신 'F5'를 선택하기 위해 매주 연구하고 활동한 기록이자 결과물이다.

2월부터 수집해둔 자료부터 9월까지 약 25개 대학에서 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한 모니터링팀의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596개의 게시물 중 47%가 여성·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었음을 고발한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따라 번졌던 중국인(유학생)에 대한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에게 민감한 주제로 떠오른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매주 서로를 다독이며 혐오표현을 직접 수집했던 팀원들의 후기도 담겨 있다.

기획지원팀의 「대학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대화방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으로 수많은 갈등이 유발되며 진통을 겪어온 대학이 실질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 인권센터에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완성한 것

으로, 실제로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규정(안)」 등 여러 자료를 부록에 포함했다.

법률팀이 수차례의 세미나와 법률 자문을 통해 작성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은 혐오표현을 사용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플랫폼 소유주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대학이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모색한 결과다. 법률팀은 혐오표현의 해악부터 관련 현행법의 한계, 표현의 자유 개념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 또한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지원팀과 법률팀이 작성하고 미디어팀이 6월과 7월에 제작했던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새로그침 가이드라인」과 「에브리타임 내 명예훼손/모욕성 게시물 법적대응 매뉴얼」은 각각 자동삭제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윤리규정 마련 요구에 묵묵부답인 에브리타임을 대신해 직접 써본 커뮤니티 이용규칙과, 그런 에브리타임에서 혐오표현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개인 및 단체를 위한 법적대응 매뉴얼이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관점으로 만든 이용규칙이 현대의 커뮤니티를 구상하는 플랫폼 소유주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 법적대응 매뉴얼이 복잡한 절차와 진행 비용 걱정에 좌절했던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다면 좋겠다.



## 모두가 입장하기 전까지 표현의 자유는 없다

같은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순수성만이 허용되는 폐쇄적인 온라인 익명 공간은 내부적으로는 보수화되기 쉽고, 외부적으로는 일반화되기 좋다. 그러나 학내 최대 익명 커뮤니티의 일정한 역할과 순기능 또한 수행되어온 상황에서 이를 폐쇄성과 익명성의 문제로만 본다거나 커뮤니티 폐쇄 혹은 신규 커뮤니티 개설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강의마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학내 소수자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에 따르면, 혐오표현 규제는 모욕, 불쾌감,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공공선과 정의의 기초에 관한 상호 확신의 공공선을 지킨다.<sup>5)</sup> 공론장이 무너진 학생사회에 유일하고도 조악하게 조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내 소수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금, 학교와 학생회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할 때면 언제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론이 돌아온다. 우리는 묻고 싶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그 자리에 입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그 공론장은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토론이 가능한 조건에 있는지를. 2011년 인권활동가, 법률가, 학자들이 함께했던 ‘표현의

5)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80쪽.

자유를 위한 연대'가 국가보안법과 보수정권의 시위·언론 탄압에 맞서 발간했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에서도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 규제’가 언급되었으며, 2019년 UN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은 ‘차별금지선언(Non-discrimination Statement)’를 마련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평등 정책(Equality Policy)’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대학만의 사안은 아니다. 창작물, 게시물이 있는 곳이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어디서든 논쟁은 시작될 수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두 번째 비대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입장하기 전까지 표현의 자유는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학과 사회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면, 그리하여 이 사회에 숨 쉬며 접속해있는 모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각 대학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말하기 시작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다시 열기 위한 출발점이자, 공동체에서 더 이상 구성원이 아니라 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24명의 시도에 열정을 다해 도와주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이주영 선생님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님,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로리주희 센터장님,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F5 프로젝트의 활동을 기사로 실어주신 비영리독립언론 <대학알리>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신문>에도 감사드린다.

2020년 9월 18일

유니브페미 대표  
F5 프로젝트 사업위원장  
서영





#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발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F5 프로젝트 모니터링



## I. 소개

모니터링팀은 2020년 5월 14일 F5 프로젝트의 출범과 함께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F5 프로젝트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다섯 명이 모여 직무를 논의했고 추가모집 이후 7월부터는 총 여섯 명이 팀원으로서 활동했다.

직접 모니터링 이외에도 SNS 계정을 운영하여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내 혐오성 게시글을 제보 받았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PDF 화면 캡처를 통한 아카이빙 작업을 병행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1일에 진행된 기자회견 <우리를 삭제하는 대학 내 500가지 혐오표현을 고발합니다>를 준비하며 550개의 자료를 직접 신고한 바 있다. 중복 집계된 수치를 제외하면 9월 10일까지 수집한 자료의 총량은 596개이다. SNS로 제보 받은 자료를 포함한 게시글의 수는 총 610개로, 모두 모니터링팀 공유 계정의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있다.

혐오성 게시글을 수집하는 팀 내의 기준은 F5 프로젝트 첫 모임에서 진행한 혐오표현 교양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항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발화의 대상이 사회적 소수자이다. ②사회적 소수자를 모욕, 멸시, 위협하거나, 차별을 조장한다. ③특정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차별에 기반을 둔 발화로써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

수집한 혐오성 게시글은 학교명, 혐오표현이 드러난 곳(본문/댓글/전

부), 혐오표현의 유형을 기록하여 보관했다. 이때 혐오표현의 유형은 실무적인 어려움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모욕형, 선동형 등의 종류가 아닌 차별사유에 따라 나누었다. 차별사유는 활동을 거둬들이며 추가·수정을 거쳐 총 열 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편의를 위해 1부터 10까지의 연번 순으로 정리했다. 차례대로 ①여성, ②퀴어, ③장애(질병), ④학벌주의, ⑤인종, ⑥비건(혹은 중), ⑦페미니스트, ⑧지역, ⑨나이주의, ⑩사회경제계급이다.

수집 대상이 된 학교는 총 25개로, 이는 지인이나 행사 참여자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곳의 총 개수이다(경희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결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경기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중앙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실질적인 수집은 5월 21일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대학 시험기간인 6월 중을 비롯해 모니터링을 잠시 쉬어가는 때가 있었지만 9월까지 아카이빙 현황을 매주 보고했다.

또한 이 아카이브에는 F5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유니브페미 집행위원회가 수집한 혐오성 게시글이 포함되었다.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수집한 자료이고, 지인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11개교를 대상으로 했다(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 II. 아카이빙 결과

### 1. 아카이빙 현황

#### (1) 아카이브 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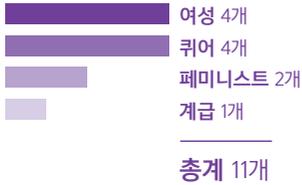


단, 제보 받은 게시글은 아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2) 혐오유형별 개수



### (3) 위법성 게시글 혐오유형별 통계



## 2. 경향성 분석

### (1) 여성 / 페미니스트 관련 혐오 경향

#### ① 정의기억연대 회계비리 의혹 관련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에타 내에서도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여대 에타의 경우 정의연 회계비리 의혹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입장을 취하며 정치적인 판단을 유보해두려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반면 공학 에타에서는 정의연을 ‘여성단체’로 프레임하며 정의연의 비리 의혹을 여성단체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여 비판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회계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윤미향 대표를 성별을 근거로 해 조롱하는 모욕·혐오성 게시글이 다수 게시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이어지며, ‘여성단체가 같은 페미니스트 집단을 감싸느라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는 방향으로 비난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억측은 1)-③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가해 고발 이후에도 나타났다.

## ②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관련

손정우에게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대부분 에타에서 손정우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여론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일부 공학 에타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옹호하는 글이 포착되었다. 이는 주로 ‘사법부는 죄가 없다’, ‘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법에 불만이 있다면 입법부를 욕해라’ 등 사법부 판단의 기계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글들이었다. 이러한 취지의 글이 결과적으로 규탄 집회를 주최한 여성단체 및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성 게시글로 파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 ③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가해 고발 관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보도 초반에는 에타 역시 여타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점차 대학별 에타의 정치적 스탠스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박 전 시장의 업적을 기리거나 반대로 진영논리에 기반을 두고 특정 거물급 정치인의 이름 및 정치적 쟁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죽음이라고 추측하는 방식의 게시글이 나타났다.

이후 언론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자 박 전 시장에 대한 비판 또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여대 에타는 박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동시에 익숙한 패턴의 2차가해성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공학 에타의 경우 피해자의 고발을 둘러싸고 정치배후설, ‘꽃뱀설’을 언급하는 경향이 등장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을 특정 정당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진영논리의 근거로 이용

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이때 특정 정당을 비하하고자 성폭력을 희화화하는 여성혐오적 표현이 등장했으며, 이는 이후 박 전 서울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 **(2) 성소수자 관련 혐오 경향**

### **①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등록 포기 관련**

트랜스여성 A씨가 언론을 통해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했음을 밝히자 여대 에타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우는 퀴어 혐오성 게시글이 게시판을 뒤덮었으며, 의도적으로 A씨를 색출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 이는 여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는데 ‘트랜스젠더는 여성의 권익을 해치는 존재이며 따라서 법적 성별 정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퀴어 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모임 또는 개인이 대항하는 움직임을 펼쳐보기도 했으나 심한 수준의 비방이 따랐다. 결국 A씨가 입학에 취소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한편 공학 에타에서는 위의 경향을 비판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는 퀴어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 페미니스트와 여대를 비난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학 에타에서는 여대 에타 내의 혐오 경향을 모든 여대 재학생과 페미니스트의 문제로 확대해석했으며,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학벌주의에 따른 차별적 발언이 잇따랐다.

## ② 이태원 클럽발 감염 관련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을 두고 에타 내에서는 노골적인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발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지목된 클럽의 상세 정보나 확진자 동선에 대한 상세 정보가 담긴 글이 활발히 공유되었다. 공익적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에서 벗어나 방역과 관계없는 성소수자 문화를 평가, 비방하며 혐오를 부추겼다. 이는 아웃팅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었다.

이러한 혐오성 게시글은 결과적으로 성소수자 전체에 대한 비난과 비방으로 이어졌다. 성소수자 유튜버, 쿼어퍼레이드, 성소수자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공간 등을 공격·전시하는 혐오성 게시글이 ‘핫게시판’에 선정되며, 댓글을 통해 더욱 노골적인 혐오발언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성소수자 혐오는 여대, 공학을 불문하고 모든 커뮤니티 내에서 나타났다.

## ③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논의는 대부분 대학에서 활발하지 않았으나, 여대 에타 내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글이 카드뉴스, 웹자보 형태로 게시되었으며, 반대 이유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었다. 모니터링 대상 학교 중 한 곳에서는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차별금지법을 홍보하는 글이 게시되자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

성하는 의견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으나, ‘퀴어게시판’이 있는 대학에 한해서만 일부 등장할 뿐 적극적 연대나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인종주의 관련 혐오 경향**

#### **① 코로나19 초기, ‘우한폐렴’ 관련**

코로나19 확산 초기, 바이러스와 국적을 연결시키는 차별과 혐오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중미디어가 코로나19를 ‘우한폐렴’이라고 호명하며, 에타 내에서도 코로나19를 중국, 중국인 등과 연관 짓는 혐오 정서가 만연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식의 혐오성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캠퍼스가 차이나타운 등과 밀접해 있는 대학의 경우 에타 내에서 더욱 빈번하게 혐오발언이 등장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혐오 경향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에타 내 학생들의 인종주의적 정서가 같은 학내 구성원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직접적 차별로 이어졌다는 점에 있다. 이전부터 만연했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코로나19 관련 혐오 경향과 결합하여 이들의 학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종주의적 주장으로 증폭되었다.

#### **② Black Lives Matter(BLM) 운동 관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추모 여론이 형성되자, 에타 내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로 동양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타 인종의 정체성과 서로 비교·경

쟁하는 식의 글이 올라왔으며, 코로나19의 확산 초기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동양인 차별 사건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전개되었다.

여대 에타의 경우, BLM 운동을 둘러싼 비판 분위기가 더욱 크게 형성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흑인 인권 쟁길 시간 있으면 여성 인권 쟁기라’는 발언이 대표적이었으며,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흑인이라는 인종적 정체성보다 ‘더 큰 소수자성’을 띠는 논리가 주를 이뤘다.

### ③ 의정부고 관짝소년단 패러디 관련

의정부고의 관짝소년단 패러디 논란은 에타 내에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패러디를 위해 시도한 블랙페이스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은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 추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의정부고 졸업사진에 문제를 제기한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해당 논란과 관계없는 과거 발언을 가져와 욕설을 사용하며 비방하거나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관짝소년단 패러디에 대한 과도한 문제 제기는 흑인에 대한 언급 자체를 막는 이른바 ‘역차별’이란 식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 (4) 공정성 논란 관련 혐오 경향

### 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관련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은 스스로를 ‘예비 취준생’으로 정체화하는 대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에타 내에서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분노에 가까운 혐오성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그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 모두에 대한 ‘기만과 불공정’이라는 식으로 의견이 형성되었다. 이는 결국 학벌주의 담론으로 이어지며, 고졸 및 전문대 출신 취업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로 파생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벌주의 논리는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였다. 이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지역과 사회경제계층에 따른 차별적 게시글로 이어졌다.

### ② 행정수도 이전 관련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국내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 이슈와 결합하며, 에타 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은 스스로를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구성원으로 정체화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대부분 행정수도 이전이 ‘상위권 대학’에 대한 탄압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이때 ‘상위권’이란 대학의 질적 측면이 아닌 입시 결과에 따른 사회적 평가이며, 학벌주의적 지표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서울대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쟁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불공정 담론

과 결합하며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으로까지 번졌다. 지역균형 선발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반박도 있어 일방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지균충’과 같은 말이 사용되고 지역혐오와 학벌주의적 논리가 빈번히 등장했다.

### ③ 공공의대 관련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이슈로 떠오르자, 의예과를 보유한 대학의 에타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주로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일부 대학 에타의 경우 ‘동맹휴학’ 참여를 독려하는 글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맹휴학에 참여하지 않는 학우들을 ‘선별’, ‘색출’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퍼지며, 에타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포착되었다.

의료계 파업의 선전 중 수어 오용으로 인해 농인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서 이 문제제기를 ‘장애인의 피해의식’ 혹은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주장’이라고 비하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비판받았으나, 비판을 수용하기보다 논란을 부정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자 차별적인 발언 및 논리를 옹호·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예과 커뮤니티 바깥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정원 확대를 통해 의대에 진학한 사람은 업무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학벌주의적

논리가 확산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을 성급히 일반화하여 루머를 남기도 했다.

### 3. 총평

2020년 모니터링 기간 동안 대학별 에브리타임을 통해 파악된 혐오성 게시글은 총 596개, SNS로 제보받은 건을 합치면 610개이다. 직접 수집한 596개의 게시글 중 총 11개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있는 글로 분류되었다.

596개의 혐오성 게시글은 ①여성, ②퀴어, ③장애(질병), ④학벌주의, ⑤인종, ⑥비건(혹은 중), ⑦페미니스트, ⑧지역, ⑨나이주의, ⑩사회경제계급이라는 총 열 가지 혐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분류 결과 혐오성 게시글이 가장 많이 집계된 유형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였으며, 여성과 인종에 대한 혐오가 그 뒤를 이었다.

혐오성 게시글의 경향성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인 여성·페미니스트 혐오/성소수자 혐오/인종에 따른 혐오/공정성 논란 관련 파생 혐오로 정리할 수 있다.

(1) 여성/페미니스트 혐오 경향은 크게 ①정의기억연대 회계비리 의혹, ②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③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가해 고발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위 사안은 모두 에타 내 페미니스트 및 여성단체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차

별 논란은 이전의 젠더 이슈가 다시 파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매번 반복적이고 유사한 형태의 여성·페미니스트 혐오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 (2) 성소수자 혐오 경향은 크게 ①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등록 포기 사건, ②이태원 클럽발 감염, ③차별금지법 발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이 중 ②, ③번 사안은 정치적 쟁점이 성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세 가지 이슈로 미루어 보아 성소수자 혐오 경향은 여대와 공학을 가리지 않고 차별적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 (3) 에타 내 인종 혐오 경향은 크게 ①코로나19 초기 ‘우한폐렴’ 논란, ②Black Lives Matter 운동, ③의정부고 관악소년단 패러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위 사안은 모두 특정한 사회적 이슈가 구체적 인 집단 및 특정한 개인에 대한 모욕과 멸시로 이어졌다는 공통성을 띤다. 또한 다른 혐오 경향들과는 달리 찬반 의견이 나뉘지 않고, 반대의견과 혐오발언이 에타 내 주류 정서로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 (4) 에타 내 ‘공정성 논란’ 관련 파생 혐오 경향은 크게 ①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②행정수도 이전, ③공공의대 신설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위 세 가지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 에타에서 공정성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는 의견이 보다 뚜렷하게 통일되었으며, 지역, 학벌에 따른 차별발언이 주로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 III. 갈무리하며

#### 1. 정리

공학 대학은 전반적으로 반페미니스트 정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평등 담론의 반동으로서 페미니스트 혐오·여성 혐오가 가장 만연하게 드러났다. 여자 대학에도 반페미니스트 정서를 공유하거나 성평등 담론에 무관심한 집단이 존재하나,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배제적 성향의 페미니스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공학 대학의 페미니스트 혐오 경향을 성평등 담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면, 페미니즘은 모든 대학을 통틀어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의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경향을 살폈을 때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고 대상화하는 것이 차별·혐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혐오성 게시글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례는, 학교 본부 차원의 노력으로서 전문적인 젠더 수업이 개설되고 커뮤니티 이용자인 학생들이 평등에 대해 직접 고민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경우뿐이었다. 이를 통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변화와 형성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2. 수집후기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 원정

에브리타임은 총여학생회장 재임 시절 실제로 나를 마구 위협했고, 꼭 나라는 실체를 향하지 않더라도 30초에 한 번씩은 상처받는 글과 마주치게 되는 곳이다. 이런 차별주의자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 혐오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내가 해온 일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 불평등을 지키려는 마구잡이식 논리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그런 논리에 상처를 받는 내가 있다. 대학을 떠나거나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게 되겠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의 힘을 안고 무시가 아닌 대응으로 나섰다.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강조했던 지점은 자기를 잘 돌보자는 것이었다. 상처받고 지치면 반드시 자기를 먼저 지키자고. 하지만 다 같이 맞서고 있다는 의식 때문이었을까? 다들 지치지 않고 헤쳐 나가주었다. 팀원들이 그려주었던 것처럼 나는 계속 희망을 말하고 싶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태가 비록 절망적이어 보여도 우리는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 F5 프로젝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앞길도 비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집까지 해줬으니 잘 좀 보고 고치라’ 전하고 싶다 - 아현

학교에서 미디어를 전공하는데 동기들과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에타 연구하면 논문 한 편 나온다.” 친구들과 이런 농담을 할 만큼 에브리타임 안에서 이뤄지는 발언은 2020 대한민국의 청년층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모니터링팀 활동을 통해 에브리타임 내 혐오의 맥락과 경향을 읽어내는 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고, 이 자료가 언젠가는 대한민국 청년층의 정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쓰이리라 생각한다.

‘무엇에 반대하는지 아는 건 쉬워도, 뭘 원하는지 아는 건 어렵다.’ 에브리타임을 모니터링하며 가장 많이 떠올린 영화의 명대사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차별과 혐오 글이 넘쳐났지만, 뭘 원하고 이런 글을 쓰는지 알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 이유를 모르고 계속해서 수집하자니 때론 답답하고, 괜스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있을 사람들에게겐 ‘우리가 당신의 알팍한 욕망을 이곳에 수집해줬다’ 말하고 싶고, 그 외 관계자들에게겐 ‘수집까지 해줬으니 잘 좀 보고 고치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

## 차별 없는 건강한 온라인 문화 형성의 방향성을 찾기를... -혜린

언제부터인가 ‘에브리타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러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게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에는 ‘에타 믿거(믿고 거른다)’라는 말이나 에브리타임이 일명 ‘레드일베’로 불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익명이라는 가림막 뒤에 숨어 소수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를 내뿜는 곳, 그리고 그 형태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에브리타임’이 아닌가 싶다. 물론, 어느 커뮤니티가 그렇듯이 실제로 그 안에서 여론을 생성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류는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도 에브리타임의 여론이 곧 대학의 여론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혐오 짙은 ‘에브리타임’의 분위기를 비판하는 글들도 분명 내부에서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면 한번쯤은 들여다봤을 어플,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공감을 많이 받은 ‘햇게시판’의 글들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파급력을 가진 ‘에브리타임’이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안팎의 개선이 시급하다. 비대면 시대 등장 이후 온라인에서의 공간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번 F5 프로젝트와 모니터링팀의 혐오 경향성 분석 자료들을 통해 혐오 없고 차별 없는 건강한 온라인 문화 형성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우리의 활동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 민근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수많은 혐오발언과 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에브리타임이 과연 바뀔까? 대학생 최대의 익명 커뮤니티라는 이곳의 분위기와 문화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사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물음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그 답을 듣기 위해 에타를 모니터링하고, 혐오글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신고하고, 글을 썼다. 나아가 에타 본사 앞에서, 방심위 앞에서 시위를 했다.

어떤 답이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가볍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 에타는 똑같이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끔찍한 공간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활동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흔히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그 승자는 단 한 순간에 정해지는 게 아니다. 결국 긴 호흡으로 싸워나가는 쪽이,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쪽보단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쪽이 이겨온 게 역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결국에는 승자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온 활동은 승리의 그날을 위한 기록이다. 이 기록의 여정에 함께해온 모든 팀원 분들과 우리 팀을 이끈 원정님, 그리고 다른 모든 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 - 영영사원

큰 고민 없이 참가하게 되어서 각오도 부족하고 성실하지도 못해서 부끄럽고 아쉽다. 많은 혐오표현들을 보면서 조금 피폐해지기도 하고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에브리타임이 사용자의 발전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길 희망한다 - 유진

이렇게 살다간 미쳐버리겠다, 싫어서 참여했다. 활동 내내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싶으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잡아보고 싶어진다.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대학 내내 궁금했지만 아직도 모른다. 에브리타임은 언제나 화형당하는 마녀의 기분으로 사람들이 날 어떻게 태우는지 확인하러 가는 곳이었다. 살면서 들을 욕을 에타에서 다 듣다 보니 이제 익명의 누군가가 하는 욕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인간이 되었다.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 F5와 함께했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회사의 결정을 외부에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한다. 외부의 목소리가 맞는 말일수록 더 바꾸기 어렵다. 에브리타임이 사용자의 발전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길 희망한다.



#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F5 프로젝트 기획지원팀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연구용역보고서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의 5장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본 요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 I. 총론

## 1. 추진 배경

최근 몇 년 사이 성별이나 직업, 지역 등 특정한 정체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혐오표현이 서로의 존엄을 훼손하고, 듣는 이에게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표적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하며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sup>1)</sup>

대학사회 역시 수업 중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대화방에서 범람하는 혐오표현으로 수많은 갈등이 유발되며 진통을 겪어왔다.<sup>2)</sup> 하지만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해결이 어떻게 가능한지, 예방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모색하기는 쉽지 않았다. 학내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물리적인 폭력

1)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 「혐오표현 리포트」의 정의를 참고했다. 더 자세하게는 부록 4.(1) 혐오표현의 개념에 기술되어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초중고 교사, 대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공무원,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표현’에 대한 개입과 대응 필요성에 대해 초중고 98.3%, 대학 100.0%, 공공기관 94.4%, 언론 100.0%가 매우 또는 다소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건에 비해 경미하게 취급되었고, 혐오표현을 판단하고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규범이 부재했다.<sup>3)</sup>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평등한 교육기회와 참여 및 발언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생활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에 대한 상호존중, 차별금지, 다양성의 원칙을 저해하는 온·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 개입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 또한, 혐오표현을 넘어 다양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선언하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구성원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고,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이 격려되는 대학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규정 또는 조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이 되는 적용 범위와 예방 및 대응의 의무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학내 규범화 방안을 모색한다. 부록으로는 학내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현행 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또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안)을 담았으며,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사건처리

---

3) 위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실시한 FGI에 참여한 대학의 인권센터 등 관계자들은 기관에서 혐오표현에 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인권센터 등에서 적절히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가 소송에 휘말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담당자나 대책위원·심의위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관련된 상황 및 사례도 수록했다.

## 2. 목표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 내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환기하고자 한다.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규범화하는 것은 학교본부가 서로 다른 구성원과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파괴하는 혐오표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공표함으로써 평등한 대학사회와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3. 법적 근거

이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과 목적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 (1) 국제인권규범

-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UN 제정)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sup>별첨1</sup>  
(1966년 UN 채택, 1990년 한국 가입)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sup>별첨2</sup>  
(1966년 UN 채택, 1978년 한국 가입)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sup>별첨3</sup>  
(1979년 UN 채택, 1985년 한국 발효)

## (2) 국내 법령

- 헌법 <sup>별첨4</sup>
- 국가인권위원회법 <sup>별첨5</sup>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sup>별첨6</sup>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sup>별첨7</sup>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sup>별첨8</sup>

### (3) 학내 규정

학내 규정은 학교마다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법적 기반으로 제시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학칙 중 총칙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이념’ 또는 ‘교육목표’가 명시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대화와 공감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토론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대학 공동체와 인재 모두의 저력이 될 것이므로,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의무는 충분히 학칙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정관에 버금가는 인권규범이나 별도의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들이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학칙 외에도 학내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인권’,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 ‘장애학생의 학습권’ 등의 조항에서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학생자치 차원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이나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제정한 바 있는 학교라면 학생사회에서 이루어졌던 통찰과 숙의의 역사를 이어받아 학교 차원의 혐오표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I.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안전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존중의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에게는 혐오표현의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혐오와 그 해악에 대응할 각각의 역할이 주어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본부에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되는데, 대학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대학 공동체 전체가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sup>4)</sup>이다.

### 1. 학교 본부

총장, 처장, 학장을 비롯한 학교 본부의 관리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평등과 반차별의 권리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혐오표현의 총괄책임자인 총장은 학내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다양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확장을 통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총장 직속 또는 부설기관의 형태로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고, 법리적 지식

---

4)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 전반에 적용되는 권리와 책임」 (University-Wide Statement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서 인용. 전문은 하버드대학교 교무처(Office of the Provost) 홈페이지 <https://provost.harvard.edu/university-wide-statement-rights-and-responsibilities>에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위촉을 비롯하여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각 기구와 협력하여 각 조직 내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 개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며, 혐오표현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중간책임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 2. 학과

학과장을 비롯한 전 학과의 교수진은 차별시정기구와 중간책임자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학과 내에서 혐오표현과 괴롭힘,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학과가 발행한 자료 등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학과 차원의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평등한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하며, 학과 내에서 문제 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처리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에 따라 학과 내에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과 사무실은 학교의 학사운영, 행사 등 전반에 걸쳐 혐오표현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배제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학생회

모든 학생회장(단)은 학생회가 구성되는 초기에 학내 기관 또는 외부 관련 기관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학생회가 주관하는 축제 등의 학내·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혐오표현과 괴롭힘,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각 학과와 협력하여 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혐오표현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학내 혐오표현 발생 시 학생회는 부록 4.(1)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기준 등을 참고하여 공동체 내 소수자 집단의 존재와 혐오표현의 해악, 그리고 이것이 모든 구성원이 연루된 문제임을 환기시킴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동체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 4. 교직원

채용 및 임용 초기 단계에 혐오표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직원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또, 혐오표현이 수업 중, 학교 환경, 연구실, 게시물이나 안내사항과 같이 자신이 책임지는 활동 영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교직원 간이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 또는 노동조합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5. 차별시정기구

차별시정기구는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예방과 사건 대응을 담당하며, 학내에 존재하는 제도적·문화적 차별을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 별도의 부처나 위원회, 기구로 분리·특화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이미 학내에서 인권침해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차별시정기구는 혐오사건 발생 시 학생, 직원, 교수에 대한 상담, 조사, 조정과 중재를 비롯해 경우에 따라 징계까지 이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차별시정기구는 혐오표현 발생 시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교수, 학생, 직원 등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피해자의 비밀유지,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히 지원할 책임이 있다. 또, 실무 책임자로서 사건의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총괄해야 한다. 차별시정기구는 학내 영역별 권리 인식과 차별·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고, 사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차별시정기구의 활동 전반과 그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6. 자치언론

학내 언론사는 학내 여론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기사 발행 시 혐오 표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직접 발간물뿐 아니라 학교 당국이나 총학생회에서 생산하는 미디어나 출판물에도 혐오표현이 포함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으며, 혐오표현 발생 시 총학생회와 협력하여 혐오표현의 판단기준과 해악 등을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평등한 대학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부록 2.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

## 7. 학생

학생 역시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하고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끼는 구성원을 지지하며 혐오표현 발생 시 신고와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항발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택할 수 있다. 대항발화는 혐오표현의 대상을 뒤집어 맞대응함으로써 혐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상대의 혐오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목격자, 동료, 구성원들이 모두 대항발화에 동참하면 피해자가 아닌 발화자가 고립되는 효과를 낳는다.

## 8.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나 플랫폼사업자는 대학 커뮤니티라는 공공성 또는 대표성을 인지하고 혐오표현 없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와 관련 협약을 맺어 혐오표현 신고 조사에 대한 차별시정기구와 경찰의 타당한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부분 학생 구성원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협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이나 사이버불링 등이 발생했을 때 자정 노력을 하고 피해자와 연대해야 한다. 개별 게시판 관리 권한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관리하는 게시판 내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문화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의 삭제에 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별시정기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의 협약 등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 III.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실질적·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일관된 관점을 제안하고, 다양한 학내 규범화 방안의 정합성과 현실성, 장점과 단점을 짚어본다.

#### 1. 주요 쟁점

##### (1) 적용 범위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은 기본적으로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연구생 등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규정 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인권센터와 같은 기존 학내기구의 규정에 적용 범위가 학내 모든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반복 기술할 필요가 없지만, 학생처 산하기구로 학생상담센터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의 사건을 다룰 수 없으므로 기구의 독립성과 규정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대학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연구원, 자원봉사자 등 대학 내뿐만 아니라 대학 외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대학 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유관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화되는 혐오표현도 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 구성원이 학외나 유관 기관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듣게 되거나, 거꾸로 그들에게 혐오표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규정은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교내활동, 현수막, 대자보, 교내신문, 교내방송, 기타 발간자료,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대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페이지를 비롯한 학내 인터넷망,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에서의 문답, 게시물과 댓글 등 온라인 활동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

## **(2)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의무**

대학 내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여기에 대응할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혐오표현이 발화될 때마다 징계와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대학은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혐오표현 예방에 힘써야 한다. 예방에는 교육부에서 강제하는 모든 구성원의 의무교육 이수율 촉진하는 것 외에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학생 활동 및 교육 지원, 홍보 강화, 교육

필수화, 교양교육 연계<sup>5)</sup> 등 적극적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총칙에서 해당 개념을 정의한 다음 이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등 예방의 의무와 상담, 조사, 사건처리 등 대응의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칙에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의무를 담아낼 수 있다. 단, 사건 처리 절차에 개정이 필요하거나 최소한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부록 1. 대학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규정(안)과 3. 혐오표현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를 참고하여 시행세칙 등을 제정할 수 있다.

그밖에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차별행위’가 명시되어 있는 학교도 드물게 있는데, 이 조항의 존재만으로 혐오표현을 차별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행위를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분하여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인권침해’ 항목의 예시로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

5) 2019년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연구용역보고서 「서울대학교 인권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에 수록된 인권/성평등 교육의 발전적 방향 중 교육 활성화 방안을 참고했다.

## 2. 학내 규범화 방안

혐오표현에 관한 예방과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적용 및 운영될 수 있는 근거로서 규범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교본부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학교본부의 의지가 충분한 경우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은 「평등 정책」이나 「차별금지선언」 등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대학의 사례들처럼 학내의 가장 상위규범에 해당하는 정관에 포함되거나 그와 비슷한 위상의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본부가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이나 자원 부족 등 여타의 이유로 학내 규범화에 소극적인 경우라고 해도 학생이나 직원의 주도, 혹은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와 같은 학내기구의 주도로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규범화 방안이다.

(1)	인권규범 제정 O	차별시정기구 신설 O	관련 규정 마련 O
(2)	인권규범 제정 O	차별시정기구 신설 X	관련 규정 마련 O
(3)	인권규범 제정 X	차별시정기구 신설 X	관련 규정 마련 O

### (1) 인권규범 제정을 통한 차별시정기구 신설, 전용 규정 마련

먼저, 학교본부가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상위규범인 인권규범 혹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정관에 포함시키거나 연계하여 충분한 규범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인권규범에 혐오표현을 비롯한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으로 차별시정기구를 명시하여 기존의 학내기구에서 포괄하지 못한 혐오표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전용 규정을 마련한다.

이 경우 학교의 교육이념과 구조, 학사운영 전반을 서술한 정관에 인권규범을 포함시키거나 연계하는 것이 정관의 위상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학내외 여론이나 예산 등 복잡한 의결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반면 그만큼 본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2) 인권규범 제정을 통한 학내기구 규정 개정**

###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규정 또는 조항 신설)**

(1)과 같이 인권규범을 정관에 포함시키거나 연계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학내기구를 차별시정기구로 지정하고, 기존의 규정에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관련 조항만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인권규범의 규범력이 담보된 상태이므로 추가된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 또는 조항이 실질적인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내기구 규정은 학내 하위 규범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관한 규정 또는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관과 같은 상위 규범에 명확한 근거가 되는 위임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1)과 달리 여기서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있는 학내기구 규정을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하여 혐오표현 예방·대응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3) 학내기구 규정 개정

####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규정 또는 조항 신설)

상위 규범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학내기구의 규정에 혐오표현 예방·대응 규정을 포함시키거나 관련 조항만을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는 정관을 개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권규범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학내에서 이미 상담이나 사건 처리 등 실무를 맡고 있는 기구의 규정에 혐오표현이 명시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인권 이슈에 대한 수용이 더딘 한국 대학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과 (2)에 비해 규범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그만큼 학교본부의 공적 선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학내기구가 학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위에 있거나 기관 혹은 규정 자체가 부재한 경우를 포괄하지 못한다. 기구나 규정 자체가 미비한 대학에서 혐오표현 예방·대응의 제도화를 꾀한다면, 전담 기구의 지위와 규범의 위상을 보다 상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절한 위치성을 확보했을 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안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범화 방안을 시도할 수 있는 대학 외에, 학교본부의 무관심이나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혐오표현 예방·대응이 제대로 제도화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학내 구성원 간 혐오표현 예방·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학생회는 학생 자치의 영역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가며 혐오표현에 관련된 자치

규약을 마련할 수 있고, 동아리나 학내 모임에서도 자치규약이나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등한 문화 조성에 앞장 설 수 있다.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등 학내 기구가 있다면 혐오표현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규정만으로 혐오표현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이는 학교본부의 책임 및 역할 공백을 채우기 위한 일인 동시에 그 자체로 학교본부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 IV. 부록

### 1. 대학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규정(안)

#### 「대학 혐오표현 예방·대응에 관한 규정(안)」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구성원을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하고,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혐오표현”이라 함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을 표적하여, (1)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2)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 ④ “신고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혐오표현을 경험했다는 사유로 차별시정기구에 신고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 ⑤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거나 표적집단을 향해 혐오표현을 사용했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학내 부처 등과 그 소속 교원 및 직원 또는 사인 및 집단을 말한다.
- ⑥ “사건관련인”이라 함은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표적집단,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 ⑦ “2차 피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연구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 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이 규정은 강의실, 연구실, 사무실, 교내활동, 현수막, 대자보, 교내신문, 교내방송, 기타 발간자료, 각종 회의 등 대학과 관련된 모든 활동

에 적용된다.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페이지를 비롯한 학내 인터넷망,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의 문답, 게시물과 댓글 등 온라인 활동도 포함된다.

#### 제4조 (예방대책)

- ① 총장은 혐오표현 예방을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에 따라 교무처, 총무처, 학생관할 행정부서 등은 교내 차별시정기구와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비전임교원, 연구원 포함) 및 직원(임시직 포함), 본교 학칙적용을 받는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은 혐오표현 예방을 위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다. 차별시정기구는 교육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② 학교본부는 차별시정기구와 협업하여 매년 1개 이상 혐오표현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본교 구성원에게 충분히 홍보한다. 학과장을 비롯한 전 학과의 교수진은 차별시정기구의 정책 또는 지침에 따라, 학과 내에서 혐오표현과 괴롭힘,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인식 개선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한다.
- ③ 차별시정기구는 혐오표현 사건의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구성원의 접근성을 고려한다.
- ④ 차별시정기구는 매년 학내 영역별 권리 인식과 차별·혐오표현 실태를 파악하고, 사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평등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차별시정기구의 활동 전반과 그 검토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차별시정기구** (\*별도의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권장되지만, 기존의 인권센터나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차별시정기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차별시정기구의 명칭은 ‘인권센터’, ‘평등센터’ 등 단일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 (설치)

총장은 교내에 차별시정기구(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 (구성)

-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센터에는 차별과 혐오표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상담교수를 두어야 하며, 전문 상담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그 자격과 기준은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혐오표현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 구성은 센터장, 상담교수 외에도 전공과 성비를 고려하여 약간 명의 당연직위원과 추천직 기타위원으로 한다.
-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⑥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혐오표현 예방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등한 대 학문화 조성
- ② 혐오표현 피해의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
- ③ 신고 이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해결을 위한 중재
- ④ 혐오표현 피해자 치유상담 및 가해자(사건관련인 포함) 재교육
- ⑤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및 혐오차별대책위원회 보고
- ⑥ 그 밖의 혐오표현 사건 및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 ⑦ 혐오표현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 ⑧ 학내 제도적·문화적 차별 시정
- ⑨ 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기적인 학내 홍보
- ⑩ 학내 영역별 권리 인식과 차별·혐오표현 실태 파악 및 예방·대응을 위한 연간보고서 발행

## 제2절 혐오차별대책위원회

### 제8조 (설치)

혐오표현의 예방 및 사건처리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혐오차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캠퍼스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대책위원회를 둔다.)

### 제9조 (구성)

-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피해자 관련된 주무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단일한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대책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센터의 상담원으로 한다.
- ⑥ 대책위원회는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대책위원회 내에 집행소위원회 및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성비를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혐오표현 사건의 처리, 판단 기준이 합리적·객관적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정해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여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 중 해당자를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 ① 혐오표현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② 혐오표현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시정명령·권고)에 관한 사항
- ③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 ④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기타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 ① 회의는 제12조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사유를 적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건처리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대책위원회의 조치 및 징계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사건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3장 혐오표현 사건의 처리**

#### **제13조 (신고 등)**

- ① 센터는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센터에 혐오표현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③ 센터는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센터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대책위원장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① 혐오표현 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장은 피해자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혐오표현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신고인이 조사기간 중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행위를 하지 말아야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고인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발의할 수 있다.
- ④ 혐오표현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⑤ 혐오표현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수집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당해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
  2. 사건의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교내외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5조 (심의·의결)

- 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신속히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대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④ 센터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거나 공동체적 해결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의 2 (재심의)

- ① 사건당사자는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책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대책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집행소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집행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개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고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 ④ 재심의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수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인 경우 센터 관련 전공교수 또는 자문교수 위원 1인과 교수평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교수 위원 3인

2. 직원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인 경우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직원위원 4인
  3. 학생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인 경우 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가 추천하고 차별시정기구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은 학생 심의위원 중 3인
- ⑤ 재심의 특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기준은 제12조 제2항과 같이 한다.

#### 제16조 (징계 및 조치)

- ① 대책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조치
  2. 가해자의 사과
  3.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5. 피해가 발생한 학내 각 기관·기구 및 부서 또는 유관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권고
  6. 기타 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 ③ 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제17조 (기관간 협력의무)

- ① 학내 각 기관·기구 및 부서는 센터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센터 이외의 학내 각 기관에서 상담·신고, 그 밖의 절차를 통해 본교 구성원의 혐오표현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된 시행세칙에 의한다.

## 2.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학교 당국과 학생회가 배포하는 각종 안내자료와 홍보물, 학내 언론사의 기사 등을 포함한 학내 출판물, 교강사의 수업자료 등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불필요하게 언급하거나 소수자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혐오표현 발화자의 주장 또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은가?
- 내용을 중립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의제에 대한 찬반의견을 형식적으로 혹은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가?
-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제목/부제/소제목 혹은 사진/삽화/인포그래픽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 소수자 집단구성원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차별·폭력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명백한 혐오표현을 직접 인용했는가?
- 혐오표현 발화자의 지위·동기·배경·영향력을 포함하여 혐오표현 발생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 3. 혐오표현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 (1) 신고 처리 원칙

인권센터 등 사건 담당 기구는 다음 항목에 유의하여 혐오표현 관련 사건을 처리 및 대응한다.

- ① 사건 발생 시 적시에 대응절차 진행하기
- ② 혐오표현에 관한 상담과 중재 등 비공식 절차 운영하기
- ③ 피해자와 피신고인 분리하기
- ④ 피해자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하기
- ⑤ 피신고인의 보복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하기
- ⑥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
- ⑦ 사건 관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한 절차 적용하기
- ⑧ 가해자에 대한 교육, 징계 등 가능한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기
- ⑨ 해당 공동체 내의 자율적 해결과 법적 해결 조율하기
- ⑩ 후속조치로서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 사건 기록 보관, 사건처리/결과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하기
- ⑪ 상담과 지원을 위한 인프라/네트워크 형성하기

## (2)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6)</sup>

- ① 사건 상담·신고 접수(공동체적 해결 방안 모색 가능)
- ② 임시조치 및 사건 조사(당사자 진술, 증거확보 등)
- ③ 사건 해결 방식 결정(중재, 조정, 징계요청 등)
- ④ 권리구제조치(구제조치, 시정·개선 권고, 의견표명, 중재 및 조정, 징계요청)
- ⑤ 피해자 치유 및 결정내용 이행

## (3) 공동체적 해결

혐오표현 사건 처리에 있어 교육, 홍보, 정책, 지원, 연구, 자율규제 등 공동체적 해결 방법 또한 존재한다. 개별적인 혐오표현 발화의 상황들이 사건화되어 발화자에 대한 처벌로 그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만으로는 모든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도, 장기적으로 혐오표현을 예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대학 내 모든 공동체들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혐오표현의 근원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에는 다양성 및 접근성 사무소 Diversity and Access Office, 성희롱정책사무소 Sexual Harassment Policy Office, 옴부즈 오피스 Office of The Ombuds, 흑인공동체

---

6) 본 가이드라인의 신고 처리 절차는 서울대학교의 「인권센터 사건 처리 절차 안내도」를 혐오표현 대응에 맞게 참고 및 변형하여 작성하였다.

서비스센터Black Community Services Center, LGBT 공동체자원센터LGBT Community Resources Center 등 사건 대응 결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 4. 실무자를 위한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

여기서는 상담사나 대책위원·심의위원 등 실무자를 위한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상세히 소개한다. 실제 대학 인권센터나 학생상담센터 재직자들이 아래 혐오표현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표현’은 교육으로,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은 학교행정처분으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은 형사고발로 대응하는 도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sup>7)</sup>도 참고할 수 있다.

### (1)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고용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sup>前科</sup>, 성

---

7)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124쪽, FGI에 참여한 대학 인권센터 등 기관의 실무자들은 혐오표현의 유형과 맥락에 따른 대응 방법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사유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을 차별·혐오하거나 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up>8)</sup> 혐오표현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하나의 표현이 한 가지 유형에 고정적·배타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혐오표현 역시 존재한다.

### ①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표출

이러한 유형의 혐오표현은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일반화로, 허위에 기반하거나, 사실을 판가름하기가 모호하거나, 일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과도하게 왜곡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반드시 모욕적 표현의 형태로 나타나기보다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의 형태를 띠고 차별을 의도·암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표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해당 집단에 속한 이들이 사회적 배제와 낙인, 불이익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 “게이들 때문에 에이즈가 성행한다”

[해설] 이 문장은 마치 사실의 진술인 것처럼 사용되지만, 어떤 집단이 특정한 질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해당 집단을 비난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뿐 아니라 비논리적이다. 에이즈는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성질환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에이즈에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명시된 19가지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사유를 기본으로 하며, 대학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를 추가했다. 19가지 차별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3001001&boardtypeid=187&boardid=612474>

대해 이미 존재하는 과장된 공포심과 에이즈가 성행동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을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예: '게이는 문란하다')과 결부시켜 게이와 에이즈에 대한 낙인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성애혐오와 질병혐오가 혼합되어 있다.

###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이다”**

[해설] 이 문장은 '트랜스젠더'의 자리에 '페미니스트'가 들어가는 등 여러 형태로 변용되는 유형으로, 정신 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이미 사회에 퍼져 있는 부정적 편견을 이용해 주어의 자리에 오는 존재를 모욕하거나 타자화한다. 이러한 경우 이미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이 용인되는 사회에서만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자 동시에 질병혐오의 혐의를 띤다.

### **“미혼모나 장애인 독거노인등... 정말 노력할 수조차 없는 취약계층 돕는 건 좋지만... 노력안하고 게으른 자까지 도와야 하나 싶다. 하여간 거지근성은...”**

[해설]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순수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공정하게 측정되기 어려운 '노력'의 정도가 생존을 위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의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그럼에도 이 문장의 화자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노력 안 하고 게으른 자'라는 부정적 편견을 바탕으로 그들이 복지 혜택을 입는 것은 '거지근성'일 뿐이라고 낙인찍는다. 동시에 미혼모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노력할 수조차 없는 취약계층'으로 구분하며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타자화하고 낙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 **“제주 난민 수용하면 예멘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강간한다.”**

[해설] 이 문장은 국내에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주장의 근거로 난민 남성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수치나 경험담 등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훨씬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내국인의 성폭력 사건을 국내에서 다룰 때 그 원인을 한국인의 속성으로 꼽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 가해사실이 아니라 가해자의 국적이 문제가 되어온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목숨을 걸고 국

경을 넘어온 난민 중에는 성인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험성은 가해자 남성의 얼굴로 표상되며, 난민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한국의 국민은 피해자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은유이다. 이 문장은 외국인, 그 중에서도 난민에 대한 혐오를 강화·정당화하며, 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젠더권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오히려 저해한다.

## ② 멸시, 모욕, 위협

이러한 유형의 혐오표현은 집단이 가진 속성을 이유로 그 집단에 대한 비하, 조롱, 경멸, 무시 등을 드러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표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천대와 멸시, 소외감 등을 느끼게 하며 해당 집단을 비주류화, 비정상화, 비가시화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생산한다.

### "공부해서 공채로 시험쳐서 정규직되라 울거없다"

[해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50~70%정도만을 받고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등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의 원인을 차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의 속성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을 만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게으름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곧 효율이자 이윤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기업중심적 사고 체계다. 이 문장에는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담긴 맥락은 비정규직에 대한 천대와 멸시를 정당화하고, 비정규직 집단을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비정상적 집단으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성매매하면서 몇천씩 땡기는 여자애들 존경스럽던데”

[해설] ‘존경’을 표방하는 문장도 맥락에 따라 반어적인 의미일 수 있다. 여기에는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여성에 대한 혐오적 인식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조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 유지되어온 거대한 규모의 성산업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여성 집단 내부에서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배제하고 멸시하도록 만든다.

### “트랜스젠더가 가능한 거면 나는 트랜스삼성이다”

[해설] 이 문장은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모욕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트랜스젠더 비가시화를 강화할 수 있다. 흔히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구분되는 사회적 성으로 이해되는데, 성기 모양이나 생체에 따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기와 남성기를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간성(intersex)은 UN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7%이다. 또, 트랜스젠더의 실천은 오히려 고착화된 성 역할의 경계를 가로지르므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미개한 짱깨들 때문에 우한 폐렴 성행하잖아”

[해설] 이 문장에는 쓰인 ‘짱깨’는 ‘짜장면’의 속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중국인에 대한 멸칭이자 혐오표현이다. ‘우한 폐렴’은 2020년 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퍼지면서 붙여진 명칭으로, 이미 정부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증한 사태를 파악하고 명칭 정정을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시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원인이 우한시의 주민들이나 한국에 온 중국인 유학생들, 이주민들의 속성에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수많은 생태학자들은 지나친 개발과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장에 쓰인 ‘성행’이라는 표현은 소수자 혐오에 빈번히 사용되는 일반화와 병리화의 방식이기도 한데, 특히 한국에 이주해 사는 중국인들을 쉽게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발 폐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동양인들이 이러한 해악을 경험하기도 했다.

### ③ 차별과 폭력에 대한 조장·선동·정당화·강화

이러한 유형의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여 불특정한 혹은 다수의 청자로 하여금 그 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차별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선동·정당화 혹은 미화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표적 집단에 대한 편견, 혐오감, 공포감 등을 고취하고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까만 새끼가 여기서 돈 벌더니 만만하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해설] ‘까만 새끼’는 흑인의 인종적 특성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이 문장은 다른 민족적, 인종적 속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의 국적과 그가 소속된 인종·민족 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배척되어야 한다는 해당 표현은 ‘단일민족’ 과 ‘한민족’에 대한 믿음을 공고화하고 흑인에 대한 오래된 인종차별을 조장·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조선족등에 대한 차별적인 발화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화될 경우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며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 “페미들 학교 앞에서 집회한다는데 염산 뿌리러 갈 사람”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1조에 의거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특정 집단이 학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이유로 폭력(‘염산을 뿌리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암시하는 이 문장은 그 자체로 표적 집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 또한, 발화자와 표적 집단이 같은 학교를 생활공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폭력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표적 집단이 되는 학내 페미니스트 집단에게 구체적인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학내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애가 어리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밖으로 기어나와서 뭐하냐. 다 패버리고 싶네”

[해설] 이 문장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보호자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상황에서 해당 문장이 발화될 경우 실질적인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정 집단이 ‘밖에 나왔다’는 이유만으

로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는 선동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며, 어느 한 쪽이 숨어야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을 논의할 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 “트젠이 자기 트젠인 거 숨기고 여대 오면 소문내서 왕따 만들거임 트젠은 딱 티가남”

[해설]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트랜스젠더 스스로의 정체성을 오히려 드러내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숨기고’라는 표현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별로의 위장 정도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선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자대학에서 빈발하는 남성 가해자의 침입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트랜스젠더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왕따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차별·폭력 행위를 암시하고 있는데, 학교라는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표적 집단에게는 실체를 가진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 (2) 혐오표현의 판단기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한 경우에 혐오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는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혐오표현이 발화된 맥락과 청자와의 권력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발화자의 의도

혐오표현을 판단함에 있어 발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화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혐오표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혐오표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화자의 의도뿐 아니라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미친 영향력 및 해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발화자의 권력

발화자가 총장, 주요보직자, 교수 등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피해자 혹은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와의 권력관계

발화자와 피해자 간의 위계가 직급이나 계급, 고용형태 등으로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권력관계는 형성될 수 있다. 혐오발언이 발화되는 맥락에는 성별, 젠더, 나이, 경력, 공동체 내의 신뢰도나 인기도, 지위 등 복잡한 위계가 내재해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④ 표현된 언어의 내용과 형식

특정한 혐오표현이 학업이나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는지 등 해당 표현이 야기하는 해악의 정도, 피해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혐오표현은 말과 글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영상, 기호, 복장, 상징물,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대면상황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피해 집단의 범위

혐오표현의 피해 집단의 범위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므로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인지,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 ⑥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

혐오표현이 미치는 피해의 정도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해당 혐오표현이 미치는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학내에서 조직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배제의 선동은 특별히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 ⑦ 해당 사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분위기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는 혐오표현의 표적이 된 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발화자와 청자의 권력관계만큼이나 해당 표현이 기존의 차별과 배제를 지속·심화시키는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이나 장애인이 역사적·구조적으로 차별·배제되어온 사회에서는 남성이나 비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성립하기 어렵다.

---

## <별첨> 시민적·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

### 제19조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20조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 <별첨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 <별첨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

### <별첨4> 대한민국 헌법

---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 <별첨5> 국가인권위원회법

---

###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희된 전과<sup>前科</sup>, 성적<sup>性的</sup> 지향, 학력, 병력<sup>病歷</sup>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 <별첨6> 교육기본법

---

###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별첨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 <별첨 8>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F5

#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F5 프로젝트 법률팀



F5

F5

## I. 서론

대학 내 공론장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요즘, 각 학교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이 모이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가 공론장을 대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국 400개 캠퍼스에 4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해 ‘국내 1위 대학생 커뮤니티’를 자처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이 있다. 에브리타임은 시간표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게시판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용자인 학생들이 활발하게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학교 인증을 마쳐야만 회원이 될 수 있고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만 그 학교의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에브리타임을 제외하고 한 대학의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에브리타임은 유효한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학생회는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는 글을 ‘학우의 목소리’로써 경청하고, 에브리타임 안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전체 학생의 목소리로 과대 대표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에브리타임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혐오표현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에브리타임이 도입한 ‘신고누적에 따른 자동삭제 시스템’은 게시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신고가 누적되면 게시글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 내용에 대한 논의나 토론을 어렵게 한다. 즉, 에브리타임 안에서 지배적인 정서에 반하는 글은 허용되지 않는 편파적인 상황임에도 관리자는 개선책을 내놓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한 대학에 한정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발화는 그 자체

로 물리적 행동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브리타임이 생산해내는 폭력적인 발언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동한다. 이는 몇몇 대학의 자체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차별금지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목적상 혐오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제재는 더욱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혐오표현 제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팀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법률상의 여백을 추적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현에 대한 처벌보다도 그 해악을 알리고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선언의 필요성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의 문제에 있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 소유주와 대학 당국의 책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혐오표현 없는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 II.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 1. 혐오표현의 해악과 현행법의 한계

#### (1) 혐오표현의 해악

혐오표현은 일차적으로 그 대상인 소수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sup>1)</sup> 여기서 정신적 고통이란 단순한 기분 나쁨, 일시적인 불쾌함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말한다.<sup>2)</sup> 또한, 혐오 발언은 정신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증오범죄, 즉 물리적 폭력을 조장하기도 한다.<sup>3)</sup> 따라서 혐오표현은 소수자 당사자들에게 해악을 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이러한 사적인 해악에 그치지 않고 공적인 해악도 가져온다. 흔히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혐오표현은 민주주의 역시 파괴한다. 혐오표현은 “그 대상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sup>4)</sup>시키며,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 즉 포용의 공공선(public good of inclusiveness)을 파괴한다.<sup>5)</sup>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토론이지만, 혐오표현이 만연한 공

1) 최란 (2018),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p.55

2) 홍성수, 김정혜, 노진석, 이승현, 이주영, 조승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p.191

3) 박미숙, 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p.42

4) 홍성수 (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p.35

5) Jeremy Waldron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p.15, 홍성수 (번역)

론장에서 소수자는 안전할 수 있다는 신뢰를 잃고 배제당하며 평등한 공론장은 무너진다. 모두의 요구가 평등하게 고려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수적 다수의 주장만이 관철되는 다수주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혐오표현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가하는 공적인 해악에 대하여 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2) 현행법의 한계

현행 형법은 혐오표현을 명예훼손, 모욕, 협박죄 등 개인적 법익 침해로만 의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비대칭성을 전제로 하는 혐오표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라 집단 모욕죄가 부정된 이상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소수자 집단 안의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현행 민법 역시 혐오표현이 원고 개인에게 어떤 손해를 일으켰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현행법만으로는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가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혐오표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부 여성혐오 표현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sup>7)</sup>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괴롭힘’ 개념을 혐오표현에 가깝게 정의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

6) 박인동 (2019),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 p.23

7) 홍성수 (2013),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문이 제기된다.<sup>8)</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혐오표현은 사적인 해악뿐만 아니라 공적인 해악도 가져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에도, 현행 형법, 민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두 혐오표현을 개인적 법익의 문제로 보고 개인적 구제수단만을 제시하여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바탕으로 사적 해악과 공적 해악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혐오표현 규제법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혐오표현을 일부 규제하고 있다. 규정 제8조 제3호 라목은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목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로 보고 그에 대한 유통금지를 규정한다.<sup>9)</sup> 혐오표현의 공적 해악을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 규제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므로 적극적 규제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목은 소수자나 대항표현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혐오표현의 기울어진 측면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sup>10)</sup>

---

8) 박미숙, 추지현 (2017), 앞 보고서, pp.188-189

9) 조소영, 김종철 (2016),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pp.102-104

10) 전창영, 나은희, 최철호, 김민정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를 위한 탐색적 고찰」, pp.95-97

## 2.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의 한계

### (1)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혐오표현 양상의 특수성

온라인 공간은 초기에 민주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한 평등한 공론장으로 상상되었지만, 온라인 공간은 고도로 발달하고 세분화될수록 단순히 ‘편향적 확산기’<sup>11)</sup>의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정보를 주로 수집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나 정체성을 극화하여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sup>12)</sup>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여러 갈등의 양상은 오프라인에서보다 알파하고 극단적인 성격을 띤다. 온라인의 장점으로 여겨지던 상호성은 오히려 일부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게 하며, 온라인상의 의견과 집단을 극단화시킨다. 온라인 공간의 인지 왜곡과 확증편향으로 인해, 혐오표현은 더욱 많이 생산되고 더욱 널리 유포된다.

특히 에브리타임이 도입한 신고누적에 따른 자동삭제 시스템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편향성을 강화한다. 단순히 많은 수의 신고가 모이면 게시글이 삭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수의 의견만이 남아 확증편향을 강화한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대학의 문화가 여성혐오와 소수자혐오를 체화하고, 누구도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타임에서 절대다수로 드러나는 여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

11) 김수아, 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p.11

12) 위의 논문, p.11

하는 혐오 발언은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혐오 정서를 재생산한다.

이렇게 확산된 소수자 혐오는 또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수자의 발언권을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가 혐오표현과 소수자 혐오를 용인하고 체화할수록, 그리고 게시판에서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공감을 받을수록 소수자 혹은 인권 감수성을 지닌 학생들의 커뮤니티 사용은 어려워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커뮤니티는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소수자 혐오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평등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는 올바른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는 온·오프라인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소수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사용자의 소속과 정체성이 명확하고, 대학 캠퍼스라는 한정적인 무대를 커뮤니티의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는 혐오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학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빠르게 게시되는 글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를 표출해 그들의 실제 삶을 위축시킨다. 게다가 같은 대학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누군가에 의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행위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은 부지기수이며, 익명의 가해자가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해 사이버불링과 스토킹이 발생하기도 한다.<sup>13)</sup>

---

13) 김수아, 김민정, 이동후, 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p.217

동시에 대부분의 글이 익명으로 게시되어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질적 위협이 발생한다. 혐오 발언이 오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환경은 소수자들에게 불확실성에서 비롯한 불안감을 안겨준다. 게다가 유일하게 남은 공론장인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수자 혐오가 지배적인 정서라는 사실은 소수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긍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는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대학의 문화와 제도가 더욱 평등하게 구성되는 것을 막는다.

## **(2)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대응의 한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상 혐오표현의 유해성과 확산성에도 효과적인 인 규제는 요원하다. 에브리타임 내 혐오적인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각종 SNS의 고발 계정과 학내 여성주의 단체들의 폭로, 그리고 피해 당사자의 개별적인 고소에 그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혐오표현에 대응하던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혐오에 노출되고 위협적인 상황을 겪으며 교육권을 침해당했다. 즉, 혐오표현이 양산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 소유주도, 커뮤니티를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학생회도, 사용자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학 당국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혐오표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때까지 에브리타임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 지점으로 지적된다.

에브리타임은 사용자들의 혐오표현 문제 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응답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유니브페미가 에브리타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브리타임 내 성폭력 2차 가해 발언에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음에도, 에브리타임은 제대로 된 연락 수단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이 마련한 ‘권리침해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신원을 증명해야만 심의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호한 기준만을 마련해 두었고, 사용자들은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용약관에 동의해야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신고누적 자동삭제시스템은 에브리타임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혐오표현을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된다. 자동삭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게시글에 대한 조치는 모두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신고가 누적되면 게시글을 삭제하는 시스템은 혐오정서가 압도적인 에브리타임에서 소수자의 발언권을 빼앗을 뿐이다. 사용자를 같은 대학 재학생으로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짐에도 플랫폼이 에브리타임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방심위의 심의를 통한 규제 또한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로, 방심위의 혐오표현 규제 방식은 대항표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는 일차원적 대응이다. 방심위로 접수된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 중, ‘남성 혐오’에 대한 심의 건수가 전체 심의 건수 중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은 방심위가 혐오표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방심위의 회의록을 통해

심의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두 번째, 방심위의 심의 제재 방식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2018년에 심의된 표현의 1,959건 중 1,948건(99.4%)을 삭제 조치하였다.<sup>15)</sup>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를 정보 삭제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은 동일한 정보가 반복되는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실제로 규제되어야 할 혐오표현의 표적 집단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해 규제된 비율은 1~3%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sup>16)</sup> 그러나 혐오표현 경험 실태조사에서 이주민의 50% 이상, 성적 소수자와 장애인의 90% 이상이 온라인 혐오표현을 접했다는 연구결과<sup>17)</sup>는 이들을 향한 혐오표현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방심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차별, 지역 차별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일 뿐, 상대적으로 심의 요청이 적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

14) 윤성옥 (2019),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p.71

사무처가 18건을 상정하면 18건이 삭제되고(제67차 회의록), 180건을 상정하면 180건이 삭제되는(제 57차 회의록) 등 방심위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채로 심의를 진행한다. 이는 방통위가 발화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비하가 심하다'거나 '조롱한다'(제63차 회의록)는 욕설의 수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5) 위의 논문, p.70

16) 전창영, 나은희, 최철호, 김민정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p.96

17) 홍성수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p.94

에브리타임을 위시한 익명 커뮤니티에 만연한 혐오표현은 플랫폼의 무관심 아래 오히려 혐오에 반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를 괴롭히면서 유지되었다. 많은 학생이 고통과 배제를 호소하며 혐오표현 반대 운동을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형법에 걸릴 만한 표현들을 추려내 자기 비용으로 고소하면서 일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방식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3개월이라는 정보 보관 기한은 수사기관의 피고소인 특정마저도 어렵게 만들었다. 혐오표현은 결국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이기에 소수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소유주도, 해당국도, 방심위를 비롯한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은 혐오표현의 해악을 배격해나갈 법적인 책임과 수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 III.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제언

#### 1.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필요성

혐오표현,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혐오표현이 소수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대응할 근거는 분명히 있으나, 여전히 혐오표현이 잘못된 행위임을 규정하는 선언 혹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혐오표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해서 좌절을 겪고, 다수 정치인 또한 지지율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차별 문제에 대해 함구하면서 우리 사회 내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적인 대응이 난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 또한 문제적이다. 계속해서 보수/기독교 세력의 주도 아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전유되고,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되는 현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문제를 자율적 해결의 영역에만 둘 수는 없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혐오표현의 경우, 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실행에 있어 더욱 고초를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혐오표현을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법의 필요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에서

도 나타난다.<sup>18)</sup>

따라서 국가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항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혐오표현 규제를 통한 법익을 명시함으로써, 혐오표현을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는 사회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차별 문제와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는 이원화된 법률이 필요하다.<sup>19)20)</sup> 차별금지법은 학교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뿐 아니라 차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도원리가 될 것이며, 혐오표현 규제법은 그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혐오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한편, 법률을 통해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맥락을 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아온 역사가 분명하고, 여전히 국가보안법 등 표현의 자

---

18) 김수아, 김민정, 이동후, 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p.214

19) 차별문제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로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 차별을 규제하는 법안과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의 규제 대상과 규제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각의 문제가 차별-평등 의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떨어진 문제로 볼 수는 없으나, 차별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 행위 등을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혐오는 감정과 표현의 영역에 더 가까워 법적 개입에 세밀함이 요구된다.

유를 제한하는 법률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모호하거나 과하게 포괄적일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는 아직 법률적·학술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것은 없으나, 전술한 바,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 정의를 제안한다.

첫째,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 혹은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한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출신 지역, 고용, 학력, 나이 등과 같이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혹은 집단 구성원들 대상의 전술한 특성에 근거한 차별이 혐오표현의 주요 전제임을 명시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구조적으로 해당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적대가 반복되어 그 역사성을 갖는 경우 또한 고려해야 한다. 남성, 백인 등과 같은 다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언사가 전술한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적대성을 표출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전술한 특성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 혹은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적대성을 표출하는

행위는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적대심 혹은 분노 표출로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삶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자, 사회·구조적 문제를 재/생산하는 행위임을 명시함으로써, 혐오표현의 해악과 혐오표현 규제의 법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혐오표현’에서 ‘표현’은 특정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멸시, 모욕, 위협하는 행위 및 제삼자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표현의 방식은 말과 글 등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그림/상징물/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 모두 포함된다.

### 3.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우려와 그 대안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정의할 경우, 혐오표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인지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는 주체가 국가로 설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혐오표현 규제법안은 형사적 처벌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위와 같은 혐오표현의 사회적 맥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속고 없이 선부른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가 무엇이 혐오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권력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혐오표현은 개인의 감정 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조장·재생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고착화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혐오표현을 발화한 개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당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혐오표현을 발화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보다, 처벌을 피해 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법안에 대한 반발감만을 고조시킴으로써 혐오표현 규제법안의 실효성을 저하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뿐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가능하게 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률을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있는 표현만이 혐오표현으로 간주되어, 혐오표현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차별과 혐오에 대한 담론이 막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처벌 조항을 두어 혐오표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기보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혐오표현에 반대한다’는 국가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형성적 규제 시도를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21) 정다영 (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p.156

둘째,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혹은 개인을 공동체와 사회로부터 배제한다는 해악을 가지고 있고, 이는 곧 대상 집단 혹은 개인의 발언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 혹은 개인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기본권이지만 특정 집단 구성원의 배제나 구별, 충돌의 행위를 막기 위해 다수의 권위에 제한을 두는 행위가 민주주의 신념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sup>22)</sup> 혐오표현 규제법안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나, 동시에 혐오표현 규제를 통해 혐오표현 대상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 규제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혐오표현 규제가 취약 집단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평등을 도모하고,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면 규제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검토한 혐오표현 규제 근거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또한 대응 가능할 것이다. 단,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경우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못지않게 그 파급력과 위협이 큰 동시에 익명성과 접근 및 전파의 용이함 등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보완적인 법률이 함께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대학이라는 실제적인 공간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의 대응 노력

---

22) 위의 논문, p.154

도 함께 명시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어서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 **IV.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적 대응 방안**

본 보고서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을 상술한 바와 같이 주장하는 한편,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각 주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에도 초점을 맞춘 요구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은 자율규제를 통해 기업/교육기관 등의 주체들에게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각 주체들의 혐오표현 대응 책무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혐오표현의 근절과 예방은 단순히 국가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기업이나 학교 등의 주체들과 나아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논의를 지속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정보통신서비스 영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1조는 이 법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

올려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혐오표현은 구조적 차별 속에 위치한 소수자를 공격하고,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 속 혐오표현은 소수자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보통신망법의 제정 목적에 반한다. 혐오표현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만 한다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온라인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해 규제를 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 중 다음의 조항에 관한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열거할 것을 제안한다.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에 직면한 소수자 개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관한 인식이 미흡한 지금의 사회에서는 혐오표현 피해자의 삭제요청(제44조의2)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제44조의3) 또한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혐오표현 규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한 바 있다. 이 기본법에 근거해 정보통신망법에 혐오표현이 “타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을 명문으로 정함으로써 혐오표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제44조의7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정보에 대해 방

심위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44조의4 제2항은 불법정보 유통의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 집단 전체를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갖고, 나아가 대중이 소수자를 차별하도록 선동한다. 혐오표현이 갖는 사회적 해악은 제44조의7이 불법정보로 이미 정하고 있는 음란한 정보·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바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심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혐오표현의 해악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행정부가 제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써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표현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358호, 2020. 12. 10. 시행)에서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환경은 구성원은 제한적인 반면 혐오표현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책임자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 혐오표현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에게 혐오표현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방통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혐오표현이 누구에 의해 얼마나 많이 발화됐는지,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신고나 삭제요청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얼마나 많은 모니터링 인력이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을 실시했는지, 직원들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얼마나 자주 제공했는지, 혐오표현의 토대가 되는 구조적 차별과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가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 등을 혐오표현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다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통위가 별도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안들이 실제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이 되어도, 앞서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의 제재의 주체가 되는 방심위가 혐오표현의 정의, 맥락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집행을 지속한다면 개정안의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방심위 주체의 혐오표현 규제가 차별과 혐오표현 문제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2.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

대학은 학생들의 실제적 삶의 공간이자, 학생들이 관계를 맺어가고 소속감을 느끼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는 공동체와 공론장으로부터 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대학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다. 대학 서열화 문제와 더불어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취업률로 꼽히면서, 대학이 ‘취업기관’으로 전락하고 대학 당국 또한 공동체로서의 대학을 존속하기 위한 책임과 노력을 저버리는 상황들이 목격되는 가운데, 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대학 당국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들을 본 목차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학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법률적 개입이 반드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다. 제·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부 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은 대학의 의무 이행과 자율규제<sup>23)24)</sup>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

23) 스탠포드대학, “불관용 행위 프로토콜(Stanford University Student Affairs, Policies, Acts of Intolerance Protocol)”, <https://studentaffairs.stanford.edu/policies/acts-intolerance-protocol/> 위는 대학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차별과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는 사례이다.

24) 대학 차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안은 본 책자의 「대학 혐오표현 예방·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

첫째,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고등교육기관이 주체가 되어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 차별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고, 목격하는지, 또는 해당 표현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등의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고등교육기관 당국에 혐오표현과 관련된 사건 신고 접수가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의 내용을 실태조사 보고서에 포함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대학 차원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고등교육법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인권센터의 지위, 구성, 의무, 권한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 인권센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권센터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지위가 보장되고, 학내의 차별 문제를 사전/사후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며,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학 당국이 책임 주체 중 하나로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3. 형성적 규제

혐오표현 대응에서의 형성적 규제란 혐오표현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공익광고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형성적 규제는 사전적, 촉진적, 비사법적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이고 규제적인 형사처벌과 대별된다. 혐오표현의 본질이 결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차별이라면, 교육과 공익광고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차별을 관용하지 않는 시민사회는 규제 없이도 혐오표현을 사회의 경계 바깥으로 밀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형성적 규제는 이를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술한 1)과 2)의 규제 방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본 보고서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혐오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형성적 규제 또한 대학 등 교육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논하고자 한다.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표현이 만연하게 된 원인에는 혐오표현이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적 맥락도 있다.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그 어떠한 부분도 혐오표현을 잘못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인은 놀잇거리처럼 커뮤니티에 혐오표현을 발화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전반적인 부재는 이러한 표현들이 확산되고 재생산되는 구조를 가져왔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이용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준다면, 커뮤니티 내에서 학생들에 의한 자정 작용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안은 교육책임자 등의 의무를 다루며 “국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내에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혐오표현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형성적 규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31조를 근거로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혐오표현 교육을 기존의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에도 혐오표현 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그 예방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대학을 포함한 많은 공동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실상 공론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빠르고 즉각적으로 정보와 메시지가 전달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특수한 양상은 이전과는 다른 해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과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 있어서도, 혐오표현에 있어서도 부족한 이해와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학교 당국도, 학생 자치단체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은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선언하는 역할로써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주체를 호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발화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국가와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시정 노력과 형성적 규제를 통해 혐오와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은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위협 앞에서는 변명일 뿐이다. 선언적 의미로서의 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높이고, 혐오표현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것을 국가·사회적인 과제이자 책임으로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주요한 책임 주체의 시정 노력을 가능케 할 것이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인 혐오표현에 대해 입법적인 대응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차원의 대처가 필요함은 강조해 마땅하다.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대학 내에서 인권센터를 비롯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이 만들어진 구조적 배경과 사후적인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차원의 선언이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 VI. 참고문헌

- 1) 김민정 (2018), 「법과 자율 규제 사이: 가짜뉴스(fake news)와 혐오표현(hate speech)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발표 논문』, 2018(5), <서울: 한국종합예술학교>, pp.39-73
- 2) 김수아, 김민정, 이동후, 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 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pp.203-230
- 3) 김수아, 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33(3), pp.67-107
- 4) 박미숙, 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5) 박인동 (2019), 「혐오표현의 실태와 국내 관련 입법 현황」, 『인권법평론』, 23,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137-178
- 6) 윤성옥 (2019),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권권』, 5(1), pp.56-94
- 7) 이승현, 이준일, 정강자, 조혜인, 한상희, 홍성수 (2019), 「혐오표현 리포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8) 전창영, 나은희, 최철호, 김민정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 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방송통신연구』, 2018 (가을), <서울: 한국방송학회> pp.70-102
- 9) 정다영 (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pp.123-164

- 10) 조소영, 김종철 (2016),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1) 최란 (2018),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4 (2),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pp.47-86
- 12) 홍성수, 김정혜, 노진석, 이승현, 이주영, 조승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13) 홍성수 (2013),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대법원·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국제인권법연구회>
- 14) 홍성수 (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22 (3), <서울: 한국법철학회>, pp.27-64
- 15) Jeremy Waldron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홍성수 (번역),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F5

# 커뮤니티 새로운 지침 가이드라인

F5 프로젝트 기획지원팀



F5

F5

본 가이드라인은 F5프로젝트 기획지원팀에서 실제 에브리타임 이용규칙을 플랫폼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변형한 것입니다.

에브리타임은 같은 캠퍼스의 학생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회원이 환영받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추구하므로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 상에서 대화하는 상대방이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이 격려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한 표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를 지킵니다.



## 권리침해 행위

권리침해 행위란 스스로 그렇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고 인식된 다음 사항에 기반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불리하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모든 이용자에게 용인되지 않습니다.

- |                |                 |
|----------------|-----------------|
| ① 성별 또는 성별 정체성 | ⑤ 성적 지향         |
| ② 인종 또는 민족     | ⑥ 국적            |
| ③ 장애           | ⑦ 나이            |
| ④ 종교           | ⑧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계층 |

위 항목에 대한 괴롭힘이나 차별 및 혐오표현이 포함된 글, 댓글, 게시판, 1:1 대화는 자체심의시스템에 의해 일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은 위 항목에 대한 괴롭힘이나 차별 및 혐오표현이 포함된 글, 댓글, 게시판, 1:1 대화를 발견할 경우 신고 버튼을 통해 에브리타임 내 권리침해신고센터(<https://everytime.kr/page/right>)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심의 절차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됩니다.

## 불법 행위

불법 행위란 현행법에 반하는 아래 행위를 일컬으며, 모든 이용자에게 금지됩니다.

### ① 정보통신망법에 반하는 행위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비방, 폭로, 사생활 침해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
- 계정 공유 요청, 바이럴 이벤트 등 게시물 대리 작성 행위
- 기업·비영리기관·개인·단체,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블로그,

- 카페, 서비스의 직간접적 광고·판매 행위
- 압표 등 수익 목적의 재판매 행위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게시, 배포, 이용하는 행위

## ② 초상권, 퍼블리시티권법에 반하는 행위

- 타인의 얼굴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물, 그림 묘사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초상, 성명 등 특정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광고, 선전, 상품 판매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 ③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선거, 정당, 정치인 연관 행위

- 허위사실 공표, 불공정 비판, 비방, 비하, 모욕
- 금품 제공·지시·권유 또는 요구
- 그 외 관련법에 어긋나는 행위

## ④ 법에 저촉되는 거래 불가능 품목 거래 행위

- 주류, 담배, 마약류, 유해매체물
- 안경, 콘택트렌즈, 의약품, 헌혈증,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이미테이션 제품, 저작물 복사본, 2000불 이상의 달러/외화
- 그 외 관련법에 의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되거나,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물품

### ⑤ 전자금융거래법에 반하는 행위

- 타인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 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커뮤니티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심의 절차 및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되며, 관련법에 의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의 절차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글, 댓글, 게시판, 1:1 대화는 자체심의시스템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① 자체심의시스템

에브리타임은 작성된 게시물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감지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감지된 게시물은 자체심의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게시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② 신고·심의·사건 처리

커뮤니티 이용 과정에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혹은 권리침해 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는 다음에서 1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조장 및 권리침해
- 특정인에 대한 모욕·명예훼손·괴롭힘
- 성폭력 2차피해 유발
- 혐오선동·폭력 암시·협박·기학적 콘텐츠 포함
- 개인정보 노출·유포·거래
- 사칭·사기·도배
- 상업적 광고 및 판매
- 기타 불법 행위

최초 신고 후 24시간 내에 에브리타임은 해당 게시물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및 게시물의 내용과 신고 사유의 일치 여부를 심의합니다.

에브리타임은 심의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물에 시정 요구, 삭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처리를 위해 게시물 및 1:1 대화의 일부가 에브리타임 서버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내용은 심의를 위해 사용되며, 심의 후 1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 ③ 징계 절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신고가 접수된 이용자의 경우 심의 과정을 거쳐 게시물 삭제, 글쓰기 제한, 계정 정지, 시간표 등 일부 서비스 접근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재 사유에 따른 제재의 형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괴롭힘/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발언  
: 신고물 삭제 및 3개월 이상 계정 정지
- 커뮤니티 이용규칙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 신고 및 발견 즉시 신고물 삭제 및 3개월 이상 계정 정지
- 도배 등 비정상적 서비스 이용  
: 신고물 삭제 및 1개월 이상 글쓰기 제한

게시물이 신고된 즉시 신고 사실과 신고 항목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고지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를 제재하는 경우 제재 사유와 형태 역시 게시물 작성자에게 고지됩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해당 심의 및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내용을 토대로 재심의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게시판 관리자 제도

게시판 관리자는 커뮤니티 내에서 일정부분 운영의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숙지해야하며, 관리 영역에 있는 게시판에서 권리침해 행위 또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공지로 지정하거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탈퇴를 위해서는 게시판을 삭제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양도해야 합니다. 단, 게시판은 개설 후 3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14일 동안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이 강제로 폐쇄되거나 게시판 관리자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관리자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 게시판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존재하는 게시판이 아닌 홍보게시판, 동아리·학회 게시판 등 일부 게시판은 글 작성 1시간 이후부터 3일 동안은 작성한 글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와의 협력

에브리타임은 전국 약 400개 캠퍼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대학 공동체로의 기능 또한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내부에서 구성원의 권리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내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2020년 각 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학내의 사건 처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경찰 수사에 협조합니다.





F5

# 에브리타임 내 명예훼손 / 모욕성 게시물 법적대응 매뉴얼

F5 프로젝트 법률팀



F5

F5

본 매뉴얼은 에브리타임 내 명예훼손/모욕성 게시물에 대한 신고/고소 절차와 고소장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의 법적대응을 돕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법적대응을 진행하실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하실 때는 이 점을 먼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1. 형사적 대응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청 민원실은 고소를 거의 무조건 접수해주는 반면, 경찰서 민원실은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끝까지 접수해달라고 하면 규정상으로는 접수를 거부할 수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접수 거부가 종종 일어납니다.) 검찰청은 접수는 빠른 반면, 수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보내고 수사지휘가 도착한 이후에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사 개시가 늦어집니다. 에브리타임은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짧아 빠른 수사 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 접수를 추천 드립니다.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민원실에서 진정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은 고소인과 달리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선임하면 좋지만,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고 실제로도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에 앞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변호사회 등 무료 법률상담 사업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증거수집

컴퓨터로 에브리타임에 접속해서 해당 게시물이나 쪽지 창을 열고 PDF로 저장합니다. 이때 URL이 보이게 합니다. 여러 댓글들 중에 일부를 고소한다면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증거를 보기 힘들시더라도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 수집이 나 보존이 정신적으로 힘들시다면 믿을 만한 지인이나 학내 성평등기구 등에 증거 수집, 보존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증거수집과 정리는 원래 수사관이 할 일이지만, 수사관에 따라서 고소인에게 증거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물 URL, 게시 일시, 게시자 이름(닉네임), 게시물 요지 등을 정리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해 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관할 경찰서 수사과나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문의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2) 피고소인 특정

에브리타임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알아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알아내는 절차는 △경찰이 영장을 받아 알아내는 절차 △고소인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내 알아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첫 번째 절차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절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양쪽을 다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고소 사실을 웬만하면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글을 미리 삭제하는 경우 기록이 유실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연락할 때는 기록이 남는 연락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음 가능한 전화가 가장 좋으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등은 가계정을 사용할 가능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록을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셔야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3)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이 고소의 기준이 되므로 범죄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피고소인의 글이 허위라는 말을 넣어 일반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관이 참고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면 고소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피고소인 란에는 ‘성명불상’이라고만 써도 됩니다.

고소취지에는 죄명을 씁니다. 주로 해당되는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욕설은 모욕죄, 성적인 내용을 쪽지나 댓글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됩니다. 1:1 쪽지는 협박죄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명이 헛갈린다면 “피고소인을 아래 범죄사실로 고소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 (4) 이의제기

수사관의 2차가해, 편파수사 등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에게 민원을 넣어 징계나 수사관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거나,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화나 구두보다 서면, 국민신문고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고등검찰청 항고 → 고등법원 재정신청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5) 고소 취소

합의나 여러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는 구두나 문서로 고소 취소 의사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알리면 됩니다. 고소는 1심판결 전까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는 합의금이나 공직사퇴 등 약속한 조건을 먼저 이행하게 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 이행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민사적 대응

형사 절차로는 생각보다 처벌이 어렵습니다. 요건도 까다롭고, 그 요건이 다 맞아도 기소유예 등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또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부족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삭제, 정정 같은 형사처벌 외의 여러 가지 요구는 여기서 설명하는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은 형사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형사절차 도중에 가해자가 스스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또 형사절차를 통해 유죄판결문이 나오면 민사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면서 민사적 대응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 1) 재판 전 대응

‘대안적 분쟁해결(ADR)’이라고 불리는 절차입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을 내면 조정부에서 조정안을 제안하고, 당사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은 따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꼭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모욕, 사생활 침해 등도 다루며, 최소한 상대방의 닉네임과 메일주소는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만을 위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안에 삭제 요청을 담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게시중단 △권리침해정보심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시중단은 에브리타임 권리침해신고센터에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며, 권리

침해정보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리침해라는 의결을 받아 강제로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 2) 재판상 대응

분쟁조정에 실패하는 등 여러 이유로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피고(가해자)의 신원을 몰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에브리타임 운영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형사재판을 거쳤다면 유죄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돈이 듭니다.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중 변호사비용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배상액이 낮춰지면 ‘일부 승소’가 되어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적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청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 내릴 판결의 간략한 예시입니다.

-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위자료, 그동안 지출한 정신과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및 앞으로 소요될 추정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원을 지급하십시오.”

- **삭제명령:** 게시물이 아직 남아있고 운영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삭제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까지 에브리타임 00대 자유게시판에 “[충격] 00이 □□했대”는 제목으로 0000.00.00.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십시오.”

- **정정:** 허위사실유포를 당한 경우 정정글 게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까지 에브리타임 00대 자유게시판에 ‘0000.00.00. 게시물에 대한 정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글을 게시하십시오.

저는 0000.00.00. 자유게시판에 “[충격] 00이 □□했대”는 제목으로 00이 □□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00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00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별첨> 형사 고소장 양식 예시

#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주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성명 : _____ , 연락처 _____ ) <input type="checkbox"/>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_____ , 연락처 _____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주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피고소인의 성명을 알 수 없을 경우 '성명불상자'로 기입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편취한 자들이므로 이를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모호하거나 알기 힘들 경우 ‘모욕, 명예 훼손 등의 혐의 중 해당되는 것에 따라’ 혹은 ‘아래의 범죄사실에 따라’ 라고 기입하는 등 법을 특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4. 범죄사실\*

- 고소인은 ○○이며 피고소인은 ○○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 피고소인은 2020년 00월 00일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 ‘○○(욕설 혹은 모욕 사실 기입)’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00회에 걸쳐 공연히 고소인을 oo(해당 혐의 기입)하였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실 기입

- 그리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바이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고소이유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기타사항

-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8. 기타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고소인 \_\_\_\_\_ (인)\*

제출인 \_\_\_\_\_ (인)

-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찰서(혹은 검찰청) 귀중

##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 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택 : 직장 :	직 업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주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유무
1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2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3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4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5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거물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유무
1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2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3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4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5			<input type="checkbox"/> 접수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사 중 제출

※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증거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그중 1,000,000에 대하여는 2020.01.01.부터, 1,000,000에 대하여는 2020.02.01.부터 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각 연 5%, 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2. 피고는 ‘에브리타임 한국대’ 자유게시판에 [충격] 김폐미가 김범죄 교수님 무고했다’라는 제목으로 2020.01.01.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십시오.
3. 피고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까지 ‘에브리타임 한국대’ 자유게시판에 ‘2020.01.01. 게시물에 대한 정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글을 게시하십시오.

저는 2020.01.01. 자유게시판에 [충격] 김폐미가 김범죄 교수님 무고했다’라는 제목으로, ‘김범죄 교수가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김폐미 학우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김폐미 학우의 주장은 진실이며, 이후 김범죄 교수는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사유로 2020.03.01. 한국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게시물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4. 피고가 주문 제2항 또는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 이틀 뒤부터 이행하는 날까지 1일 10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7. 원고는 한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3학년 학생으로서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이며, 피고는 한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3학년 학생, 소외 김범죄는 한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교수, 소외 이연대는 한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8. 소외 김범죄가 2019.12.01. 자연과학관 301호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소외 이연대를 추행하여, 원고를 비롯한 한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는 자연과학관에 대자보를 붙여 소외 김범죄의 범행을 폭로하고, 원고는 이와 별도로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김범죄를 비판하는 글을 자연과학관과 ‘한국대인’에 게시하였습니다.
9. 그러자 피고는 아무 근거 없이 원고 등이 소외 김범죄를 거짓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소외 김범죄는 무고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제2항의 글을 게시하고, 원고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피고는 이 범죄사실로 2020.03.01.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10.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요 우울삽화, 사회공포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20.02.01. 1,000,000을 지출하였습니다.
1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짓 주장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입어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 중이므로 이를 중지시키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2. 한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작성의 성명서  
 13. 한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학생회 작성의 성명서  
 14. 한국대학교 총학생회 작성의 성명서  
 15. 한국대학교 인권센터의 결정서  
 16. 원고 작성의 성명서  
 17. ○○지방법원 2020고약0000 명예훼손 사건 약식명령문  
 18. 한국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2020징1 의결서

## 첨부서류

19. 위 입증서류 중 1~6번	각 1통
20. 한국대학교에 대한 2020징1 의결서 제출명령신청서	1통
21. 소장부분	1부
22.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 . . . .

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 종이기록사건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 귀중



**캠퍼스  
협오표현  
새로고침  
가이드**



# 캠퍼스 협오표현 새로고침 가이드

대학 온라인 협오표현 대응을 위한 **F5프로젝트**

지은이	<b>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b> 기획지원팀   나은, 서영, 설목, 소현, 정, 정연 모니터링팀   만근, 아현, 영업사원, 유진, 원정, 혜린 미디어팀   권수경, 은진, 장영은, 정인 법률팀   김김민수, 김윤혜진, 김예진, 김주영, 배주영, 양승연, 윤김진서, 이현수
발행일	2020년 10월 5일
펴낸곳	유니브페미
펴낸이	소현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07호 샘
전자우편	univfemi@gmail.com
홈페이지	univfemi.campaignus.me
후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이 책의 저작권은 유니브페미 F5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같은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순수성만이 허용되는 폐쇄적인 온라인 익명 공간은 내부적으로는 보수화되기 쉽고, 외부적으로는 일반화되기 좋다.

그러나 학내 최대 익명 커뮤니티의 일정한 역할과 순기능 또한 수행되어온 상황에서 이를 폐쇄성과 익명성의 문제로만 본다거나 커뮤니티 폐쇄 혹은 신규 커뮤니티 개설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강의마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학내 소수자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에 따르면, 혐오표현 규제가 모욕, 불쾌감,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공공선과 정의의 기초에 관한 상호 확신의 공공선을 지킨다.

공론장이 무너진 학생사회에 유일하고도 조악하게 조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내 소수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금, 학교와 학생회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중에서



유니브  
페어